

### 중소기업 기준(요약)

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

## 1 규모기준(외형적 판단기준) :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

### ① 업종별 규모기준 :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

〈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)〉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업<br>(6개업종)           |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| C14  | 평균매출액등<br>1,500억원 이하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| C15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| C17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24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28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업,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    | 평균매출액등<br>1,000억원 이하 |
| 광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조업<br>(12개업종)          |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| C10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          | C13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     | C16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| C19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  | C20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| C22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   | C25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| C29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| C30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| C31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D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조업<br>(6개업종)           |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| 평균매출액등<br>800억원 이하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| C18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| C21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23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| C27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33  |                      |
|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수업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| M    | 평균매출액등<br>600억원 이하 |
|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| N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| Q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| S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| I    | 평균매출액등<br>400억원 이하 |
|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| K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   | L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| P    |                    |

② 상한기준 :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,000억 원 미만일 것

## 2 독립성 기준(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)

: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

-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
- ②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)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
-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

※ 관계기업 :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·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

※ 단,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(연합회)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

## 3 2015년 달라진 점

- ① 업종별 규모기준 : (종전)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/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→ (개정) 매출액 단일 기준
- ② 업종구분 : (종전) 제조업 단일기준 → (개정) 24개 제조업종으로 세분화
- ③ 상한기준 : 상시 근로자 수 1천명, 자기자본 1천억원, 3년 평균 매출액 1,500억원 기준 폐지 (자산총액 5천억원은 존치)
- ④ 유예제도 : 창업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초과 시에도 유예허용, 유예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
- ⑤ 관계기업 판단기준 : (종전) 모든 기업,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→ (개정)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·합병·분할·폐업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